

1. 議決主文

憲政制度研究委員會規程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.

2. 提案理由

우리의 憲政史와 各國의 憲政制度를 幅넓게 調査·研究하고 各界各層의 意見을 廣範圍하게 反映함으로써 항구적인 國家發展과 國民福祉增進에 寄與할 수 있는 憲政制度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關係 專門家등으로 구성되는 憲政制度研究委員會를 設置하려는 것임.

3. 主要骨子

- 가. 委員會는 委員長 1人和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한 30人이상 60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며, 委員長·副委員長 및 委員은 學者·法曹人 등 關係專門家와 關係部處 公務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도록 함(案 第2條).
- 나. 憲政制度에 관한 各界各層의 의견을 반영하고 委員會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諮問委員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諮問委員은 各界各層의 指導級人士중에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도록 함(案 第3條).

헌정제도연구위원회규정안

제 1 조 (목적) 우리의 헌정사와 각국의 헌정제도를 폭넓게 조사·연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함으로써 항구적인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헌정제도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헌정제도연구위원회를 둔다.

제 2 조 (구성) ①헌정제도연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상 6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자·법조인등 관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외에 특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 3 조 (자문위원) ①헌정제도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자문위원을 둔다.

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8 조 (전문위원) ①위원회·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둔다.

②전문위원은 관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 9 조 (간사장 및 사무국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을 두되, 간사장은 법제처장이 된다.

②간사장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,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파견한다.

제 10 조 (공무원등의 파견근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